대전지방국세청

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

- **연말정산 시기 : 계속근무자 ⇨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** (소득세법§134,§135 원천징수시기 특례 포함 신고·납부)

※ 2021.3.10.까지 연말정산 신고 및 **환급신청 (반기 납부 신고자도 가능)**

- **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:** 근로·사업·퇴직소득, 종교인소득(3월10일), 그 외 (2월 말일, 2021년은 3월2일)

총 급 여 액
(연간근로소득-비과세소득)

총급여액 500만원 이하	총급여액의 70%
500만원 초과 ~ 1,500만원 이하	350만원 + 500만원초과액의 40%
1,500만원 초과 ~ 4,500만원 이하	750만원 + 1,500만원초과액의 15%
4,500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1,200만원 + 4,500만원초과액의 5%
1억원 초과	1,475만원 + 1억원초과액의 2%

- 근 로 소 득 공 제 (한도 2,000만원) →

근로소득금액
(총급여액-근로소득공제)

- 인 적 공 제 →

기본공제 (p.110) (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 등)	• 근로자본인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,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• 직계존속 : 만 60세 이상(1960.12.31.이전 生) • 직계비속·동거입양자 : 만 20세 이하(2000.1.1.이후 生) • 형제자매 : 만 20세 이하, 만 60세 이상
추가공제 (p.112) (경로·장애인·부녀자·한부모)	• 경로우대 공제 : 만 70세 이상(1950.12.31.이전 生) 1인당 100만원 • 장애인 공제 : 1인당 200만원 • 부녀자 공제 : 50만원(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) • 한부모 공제 : 100만원(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우선적용)

- 연금보험료공제 →

연금보험료공제	• 국민·공무원·군인·사립학교교직원·별정우체국연금 : 본인 부담액 공제

- 특 별 소 득 공 제 →

보험료 (p.121)	• 국민건강보험료 · 고용보험료 · 노인장기요양보험료 : 본인 부담액 전액공제
주택자금 (p.121) 공제산식 :㉠+㉡	• ㉠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% ㉢주택마련저축납입액의 40% • 한도 : ㉡+㉢ = 300만원 ㉠+㉡+㉢ = 1800만원 · 1500만원 · 500만원 · 300만원 • ㉠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, ※ 뒷면 참조

- 그 밖의 소득공제 →

개인연금저축 (p.135)	• (2000.12.31.이전 가입) 공제액 : 연간납입금액의 40% (한도 : 72만원)
소기업 · 소상공인 공제부금	•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(한도 : 500만원·300만원·200만원) • 총 급여 7천 이하 법인대표자 가입 및 공제가능(2016년 이후 가입분)
주택마련저축 (p.137)	• 청약저축 · 주택청약종합저축(年 240만원 이하), 근로자주택마련저축(月 15만원 이하) • 공제액 : 납입금액의 40%(한도 : 상기 주택자금공제 한도 참조) *총급여 7천만원 이하
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	• 투자액의 10%를 투자일로부터 2년내 과세기간 선택 공제(한도 : 종합소득금액 50%) • 벤처기업 직접투자액 3천만원 이하 100%,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70%, 5천만원 초과 30%
신 용 카 드 (p.145)	• 신용카드 공제율 : 일반 15%, 전통시장 · 대중교통 40% • 현금영수증 · 직불카드,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도서·공연·박물관 ·미술관 사용분 30% * ('20년공제율) 3월 사용분 30%~80%, 4~7월 사용분 80% 일괄공제
우리사주조합 출연금	•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(한도 : 400만원, 벤처 1,500만원)
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	• 임금삭감액(직전 임금총액-당해 임금총액)의 50%공제 (한도 : 1,000만원)
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	•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%공제(한도 : 240만원)

과세표준 × 기본세율 (6~42%) 산출세액

- 세 액 감 면 →

조세조약상 감면 (p.160)	• 원어민교사, 조세조약상 면세요건 충족 시 면세 혜택
중소기업취업자 감면 (p.161) (청년 90%, 청년 外 70%)	•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 · 5년, 150만원 한도 • 대상 : 청년(만 15세~34세), 청년 外(60세 이상자, 장애인, 동종업종 재취업 경력단절여성)
기타세액감면	• 정부간 협약에 따라 파견된 외국인 소득세 감면 •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•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•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• 중소기업 청년근로자·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

- 세 액 공 제 →

표준세액공제 (13만원)
특별소득공제 ·
특별세액공제 ·
월세액공제를
신청하지 아니한 사람

특별세액공제	근로소득세액공제 (p.172)	•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%, 130만원 초과 분 30%공제 • 한도:총급여액 3천3백이하(74만원), 7천만원 이하(66만원), 7천만원 초과(50만원)
	자 녀 세 액 공 제 (p.173) (손자녀 적용불가)	• 자녀 1명(15만원), 자녀 2명(30만원), 자녀 3명 이상 : 30만원+2명 초과 1인당 30만원 • 출생·입양 세액공제 :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이상 70만원 * 자녀세액공제 대상 : 7세 이상의 자녀(미취학 아동 요건 삭제)
	연 금 계 좌 (p.174) (공제율 12%·15%)	• 연금저축계좌 납입액(한도 400만원*) • 퇴직연금계좌 납입액(한도:연금저축액포함 700만원) * 50세↑ 한도확대:연금저축계좌 400→600만원,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포함 700→900만원
	보험료(공제율 12%·15%) (p.179)	• 보장성보험료(저축성 제외) 12%(한도 100만원), •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5%(한도 100만원)
	의 료 비 (p.181) 산식 : (㉠+㉡)×15·20%	• ㉠ 본인·65세 이상자·장애인·난임시술비(20%),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의료비 • ㉡' ㉠'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지출액 - 총급여액×3%(한도 700만원) * 단 ㉡의 금액 〈 총급여액× 3%인 경우 그 미달금액을 ㉠에서 차감 후 15%·20% 적용 * 산후조리원비용 :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(총급여 7천만원 이하)
	교 육 비(공제율 15%) (p.186) (학자금대출상환액포함)	• 본인:전액(대학원 포함) • 대학생 : 1명당 900만원한도(대학원제외) • 취학전아동·초·중·고생 : 1명당 300만원한도(체험학습비 30만원까지 포함) • 장애인재활교육 목적사회복지시설등에지급하는특수교육비(직계존속포함)
	기 부 금 (p.195) (공제율 100/110·15·25·30%)	• 정치자금기부금 : 10만원 이하(100/110), 10만원 초과 15%(3천만원 초과 25%) • 법정·지정기부금·우리사주조합기부금 : 15%(1천만원 초과 30%) • 한도 : 법정·정치자금(전액), 우리사주조합 : 근로소득-정치·법정×30% 지정종교外(㉠×30%), 종교(㉠×10%+MIN(㉠×20%, 종교外단체 기부액)) * ㉠(근로소득금액-정치자금기부금-법정기부금-우리사주조합기부금)
	월세액(공제율10·12%) (p.207)	•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)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소지 주택 등을 임차하여 지급한 월세의 10%공제(한도 75만원) • 총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(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)는 12% 적용
	납세조합공제	•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% 공제
	외국납부세액 (p.211)	• 한도 : 근로소득 산출세액 × (국외근로소득금액 / 근로소득금액)

결 정 세 액

- 기 납 부 세 액

납부 또는 환급세액

※ 본 자료는 세법 상 공제 항목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및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(요약)

[소득·세액 공제요건]

구분		공제요건			
		나이요건	소득요건 (100만원 이하)	동거 요건	
				주민등록동거	일시퇴거 허용
기본공제 (p.110)	본인	×	×	×	
	배우자	×	○	×	
	직계존속	60세 이상 ('60.12.31.이전)	○	△ (주거형편상 별거 허용)	
	직계비속, 동거입양자	20세 이하 ('00.1.1.이후)	○	×	
	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	×	○	×	
	형제자매	60세 이상 20세 이하	○	○	○
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×	○	○	○
	위탁아동	18세 미만	○		
추가공제 (p.112)	장애인	×	○		
	경로우대	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('50.12.31. 이전 生)			
	부녀자(50만)	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(종합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)			
	한부모(100만)	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(20세 이하)가 있는 자 *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우선 적용			
연금보험료 공제(p.117)		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			
신용카드 등(p.145)		×	○	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	
특별세액 공제 (p.177)	보장성보험료	○	○		
	의료비	×	×		
	교육비	×	○		
	기부금	×	○	과세연도 지출한 비용을 공제	
표준세액공제		특별소득공제,특별세액공제,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**표준세액공제(13만원)** 적용			

※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,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 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
※ 개인연금저축,주택마련저축,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불입분만 공제 가능
※ 정치자금기부금,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지급분만 공제 가능
※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시 **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**[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38호 서식]를 발급받을 때에는 담당 의사를 경유하고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진단한 의사가 서명· 날인하여야 함, 중증환자 판단은 의사소견 사항임

[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] p.145

구 분	내 용
공제 대상자	① 근로소득자 본인 ② **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(연령제한 없음)** **※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**
공제율	① 신용카드(15%) ② 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, 도서·공연비·박물관·미술관* 사용분 (30%) *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③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(40%)
공제금액 계산	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*=신용카드+전통시장사용분+대중교통이용분 +현금영수증+직불카드+선불카드+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* 중고차 구입액의 10% 포함 ② 공제액 =[①의 사용액× **15%(30%·40%)**] – 총급여액의 **25%**
한도액	MIN(총급여액×20%, 330만원*) ※ '20년 귀속에 한해 공제한도 30만원 상향 * 총급여액 7천만원 ~ 1.2억원이하자(280만원), 1.2억원 초과자(230만원) · 한도추가:전통시장(100만원), 대중교통(100만원),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(100만원)
공제제외	①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,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② 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연금보험료 및 각종보험료 또는 공제불입금 ③ 초·중·고·대학·보육시설 등 수업료 및 공납금 ***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공제 가능** ④ 조세, 전기·수도·전화·가스료, TV시청료, 아파트관리비, 도로통행료 ⑤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, 자동차대여사업의 리스료(대여료 포함) ⑥ 자동차 등 취득세·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(중고차는 가능) ⑦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,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

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

결제수단 및 사용처별	1~2월	3월	4~7월	8~12월
○ 신용카드	15%	30%	80%	15%
○ 직불·선불카드·현금영수증	30%	60%		30%
○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사용분 (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)	30%	60%		30%
○ 전통시장·대중교통사용분	40%	80%		40%

[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용금액 중복적용 여부]

구 분		특별세액공제 항목	신용카드공제
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		의료비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공제 가능
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		보험료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공제 불가
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	취학전 아동	교육비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공제 가능
	그 외	교육비 세액공제 불가	
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		교육비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공제 가능
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		기부금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공제 불가

[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]

구분	그 밖의 소득공제	소득공제(특별소득공제)		세액공제
	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조특법 87② (p.137)	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52조④ (p.122)	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세법52조⑤ (p.125)	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95조의2 (p.207)
공제 대상	·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·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**무주택 세대주**로서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	·과세기간종료일 현재 **무주택세대주** (근로자)가 ·**국민주택규모주택**을 ·대출기관, 보훈청 또는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	·**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 및 1주택 세대주** ·**기준시가 5억 이하인** ·**주택에 저당권을 설정**하고 금융권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**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**의 이자액공제	·근로소득이 있는 ·**무주택 세대주**로서 ·**국민주택규모주택** 또는 **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**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
기타	근로자인 세대주 본인 명의 납입분만 공제가능	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 등을 받지 않은 경우, ① 근로소득이 있는 **세대원**(일용근로자 제외)이 계약한 **주택**에 대해 ② 세대주 요건 외에 **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** ③ 세대원 본인이 실제로 해당주택에 거주할 것		
요건	·**청약저축** (240만원 이하 납입액) ·**주택청약종합저축** (240만원 이하 납입액) ·폐지된 근로자주택마련 저축 (월 15만원 이하)	〈차입금 요건〉 **1) 대출기관 차입 시** : 입주일, 전입일(갱신, 이주 포함) 중 빠른날 전후 **3개월 이내 차입**하고 차입금이 **임대인**의 **계좌로 직접 입금** 2) **거주자 차입 시** : 총급여 5천이하 근로자가 전입 등으로부터 1월 내에 2.1%이상의 이자율로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	·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**3월 이내 차입** ·**채무자**가 저당권이 설정된 **주택 소유자**일 것	·**총급여 7천만원** 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) 이하자 ·**국민주택규모** 또는 **기준시가 3억원 이하** 주택 ·**임대차계약증서**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**같은** 경우
대상 주택	('09.12.31.이전 가입자 경우)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 1채 소유시에도 공제가능	· 국민주택규모 ·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	·규모요건 삭제 ('14년부터) ·취득 기준시가 5억 이하 ('19년 이전 차입시 기준시가 4억↓) ('13년 이전차입시 국민주택 규모+기준시가 3억↓) ·오피스텔제외	·국민주택규모주택 ·주거용 오피스텔 ·주거용 고시원 *부양가족명의 임차계약 체결 주택 공제가능
공제 금액	납입액의 40%	원리금 상환액의 40%	이자상환액	월세액의 10% (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 12%)
공제 한도	연 300만원 한도			75만원 (총급여 5,500만원 이하자 90만원)
	연 500만원 한도 (·15년이상+고정금리 +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800만원 ·15년이상+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인 경우 1500만원 ·10년~15년미만+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인 경우 300만원)			
증명 서류	·주택마련저축납입 증명서	·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·주민등록표등본 ·(거주자 차입시))금전소비대차계약서및계좌이체영수증,무통장입금증 등증빙할수있는서류	·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·주민등록표등본 ·분양가액 확인서류 (공시가격 알리미)	·주민등록표등본 ·임대차계약서 사본 ·월세액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(현금영수증,계좌이체 영수증,무통장입금증 등)
주의 사항	·주택청약종합저축 (무주택확인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익년 2월까지 제출)	·임대차계약서는 공제받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명의로 작성 및 상환필요 ·법인,각종공제회 차입금 제외	·무허가주택, 농가주택 포함 ·사업용,판매목적주택포함 ·공동소유는 각자 1주택 소유로 봄 (상속 제외)	·등본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만 공제

※ 2020.12.31. 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

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(www.hometax.go.kr)

■ **서비스 오픈 일정** 2021.1.15. 이후 제공 예정

■ **제공되는 소득 · 세액 공제 항목**
○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등 14종 자료 제공

■ **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**
○ **공동인증서** 이용 홈택스 로그인 → 조회/발급 → 연말정산 간소화

■ **부양가족의 공제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**
① 19세 미만 미성년자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 동의없이 조회 가능
② 19세 이상 성인인 부양가족의 자료는 **제공동의 신청** 후 조회 가능

■ **자료 제공동의 신청 방법**
① **홈택스 홈페이지**를 통한 신청(조회/발급→연말정산 간소화)
② **홈택스 앱**을 이용한 모바일 신청 (연말정산→연말정산 제공동의)
③ **세무서 방문** 신청 (제공동의 신청서 제출)

※ 제공동의 시 부양가족 신분증·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필요